2021 과정평가형자격 정기 제1회 외부평가 안내사항

Ⅰ 시행일정

▢ 시행일정

구 분	2021년 정기 제1회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
시 행 기 간	**2021. 2. 22(월) ~ 2. 24(수), (3일간)** - '21. 2. 22(월) : **1차(지필)** - '21. 2. 23(화)~2. 24(수) : **2차(작업)** *** 24일(수)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만 해당**
합 격 자 발 표	**2021. 3. 12(금) 09:00,** 인터넷(c.q-net.or.kr, 2개월간) ※ SMS(1회, 합격자에 한함), 게시공고는 합격여부만 안내

▢ 시험시간

구 분	1차(지필)			2차(작업)
감독위원 회의	08:00 ~ 08:30			
수험자 교육	08:30 ~ 09:00			
시 험	지필	기능사	09:00 ~ 10:00	09:00 ~ 종목별 제한시간
		(산업)기사	09:00 ~ 10:30	
채 점	시행종료 후 당일 현지채점 *용접산업기사 및 용접기사 비파괴 촬영 별도 실시(2.24)			

*** 신분증 미지참시 당해 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 되므로 수험자에게 안내**
- 1차, 2차 시험 각각 신분 확인 실시하므로 1차, 2차 각각 신분증 지참
*** 해당 종목에 대한 시행자료는 별도 송부 예정**

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차 평가 시행자료

	기계	종목명	기계설계기사	
시험시간	7		평가방법	작업

지참공구 목록

			기계설계기사		
번호	지참공구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1	자 (눈금자)	300 mm	개	1	
2	각도기	180°	개	1	
3	계산기	공학용	개	1	
4	필기구	흑색	개	1	
	- 이 하 여 백 -				

[별첨2]

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

국가기술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**시험시 아래 "규정 신분증"을 반드시 지참**하여야 하며, **일체 훼손·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·인정**

★ 주의사항 : 신분증은 사진·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.

구 분	신분증 인정범위
성인	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 ⑥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
중·고등학생	① 학생증 ☞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⑤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'신분확인증명서' ☞ "별지서식1"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*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,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,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
초등학생	① 재학증명서 ☞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성명·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② 여권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⑤ 학교발행 '신분확인증명서' ☞ "별지서식1"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미취학 아동	① 여권 ②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) ☞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③ 우리공단 발행 "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" ☞ "별지서식2"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사병 (군인)	① 부대장 발행 '신분확인증명서' ☞ "별지서식1"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
외국인	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④ 영주증 ⑤ 국가기술자격증 ☞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

[별첨3]

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

최근 연이은 전자·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·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·통신기기 관리를 강화·운영함을 안내·공지하오니,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1. **전자·통신기기**(전자계산기,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)의 **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**함.

> ☞ **시험장 반입금지 전자·통신기기(사례)**
> ①휴대폰, ②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, ③테이블릿,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⑤MP3 플레이어, ⑥디지털카메라, ⑦카메라 펜, ⑧전자사전, ⑨라디오,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

2. **정리시간(이후,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) 이후 전자·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** 있는 경우에는 **당해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됨**.

3.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**"(1)신분증, (2)수험표, (3)필기구, (4)수정테이프, (5)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*, (6)전자계산기, (7)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, (8)간식" 이외물품**은 **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**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.

   * 예시 : 아날로그시계, 단순 전자시계 등

   따라서, **물품분실이 발생**할 수 있고, 이 경우 **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**하므로 **귀중품 등의 소지·반입을 자제하시기** 바람.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

[별첨4]

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안내

보다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를 **기사·산업기사 등급에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**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적용시기 : 2020. 7. 1부터 (기능사 등급은 기 적용)

○ 적용대상 : 국가기술자격 **기사·산업기사·서비스, 기능사** 전 종목 수험자

○ 주요내용 :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,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

*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당해 시험 정지(무효) 및 퇴실조치

<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>

연번	제조사	허용기종군
1	카시오 (CASIO)	FX-901 ~ 999
2	카시오 (CASIO)	FX-501 ~ 599
3	카시오 (CASIO)	FX-301 ~ 399
4	카시오 (CASIO)	FX-80 ~ 120
5	샤프 (SHARP)	EL-501 ~ 599
6	샤프 (SHARP)	EL-5100, EL-5230, EL-5250, EL-5500
7	캐논 (CANON)	F-715SG, F-788SG, F-792SGA
8	유니원 (UNIONE)	UC-400M, UC-600E, UC-800X

*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(ES, MS, EX 등)는 무관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